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3나67554 판결 [구상금(부양료) 청구의 소]

---

##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3나675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1가단5126552 판결

##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기동, 신용석

**피고, 피항소인** B의 소송수계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배성범, 안병진

**변론 종결** 2024. 10. 15.

**판결 선고** 2024. 11. 2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1가단5126552 판결

##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4,623,515원 및 그중 134,4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223,51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623,5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B(D생)와 E(F생)는 각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1978. 2. 10. 재혼하였다. 피고는 B와 전처의 아들이고, 원고는 E의 조카(E의 언니인 R의 딸)인 G의 남편이다.

나. B와 E는 서울 강동구 H, I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B가 2018. 3. 17. 뇌경색으로 쓰러져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4. 5. J병원에 입원하였고, E도 2018년 4월경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져 위 주소지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다가 2019. 1. 17. K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 4.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남편 B와 전남편과의 자녀인 Q이 있다. 뒤이어 B도 2023. 1.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전처와의 자녀들인 L, M 및 피고가 있었는데, L, M은 상속포기를 하여 2023. 2. 27.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23느단696호), 피고는 단독상속인으로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3. 3. 20.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위 법원 2023노단69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K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1) 소송대리권 흠결 망 B가 법무법인 기회에게 이 사건을 위임할 당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서 소송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적법·유효하게 소송위임을 할 수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기회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가) 원고는 망 B의 부양의무자가 아님에도 망 B가 2018. 3. 17.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망 B의 병원비로 8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으므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망 B의 소송수계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는 망 E의 부양의무자가 아님에도 망 E에게 치매증상이 나타난 2018년 4월경부터 망 E가 K요양병원에서 사망한 2022. 4. 15.까지 망 E를 위하여 병원비, 간병비, 장례비용 등으로 합계 154,623,515원을 지출하였다. 망 B는 망 E의 배우자로 망 E에 대하여 부부간의 1차적·절대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망 B의 소송수계인인 피고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위 지출금액 상당의 상환을 구하되, B의 계좌에서 인출한 4,000만 원이 그 일부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에게 114,623,515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단순승인 주장 피고는 한정승인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정승인 신청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 있으므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야 한다.

### 나. 피고

1) 소송대리권 존부에 관하여 망 B는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직접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으며, 만일 위 위임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망 B 사망 후 소송을 수계한 피고의 추인으로 소송대리권 흠결의 하자가 치유되었다.

2) 망 B의 병원비 지출 증명 부족 원고가 망 B의 병원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 B에게 증여한 것일 뿐이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망 E의 부양료 청구는 불가함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원고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망 E의 재산에서 지급한 것이지 원고가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망 B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망 E는 망 B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바 없어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망 E는 상당한 경제력을 갖추어 요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망 B는 망 E보다 먼저 요부양자에 해당했기 때문에 부양능력도 없어 부양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4) 한정승인의 유효 한정승인 신청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일부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사해의사가 없으므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 3.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B는 2021년 8월 '이 사건 소에 관한 일반 소송행위 등을 법무법인 기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데, 위 위임장에는 망 B의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지장이 찍혀 있는 점, ② 망 B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두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204212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23546 판결), 위 각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기회가 망 B의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점, ③ 이 사건 소에서의 소송수계전 법무법인 기회 주장 내용은 기본적으로 망 B의 이익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 B가 위임 당시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망 B의 법무법인 기회에 대한 소송위임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6469 판결 등 참조), 망 B의 상속인인 피고가 법무법인 기회를 통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위임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법무법인 기회가 위임장을 제출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무법인 기회의 기존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송대리권 흠결의 하자 역시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송대리권의 흠결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비용상환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 5, 10 내지 19, 26, 27, 31 내지 33, 40, 4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J병원에서 망 B의 병원비로 합계 8,138,000원을 결제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22년까지 망 E에 대한 병원비, 간병비, 응급진료비 등으로 합계 138,914,495원을 지출 또는 결제하였으며, 망 E의 장례비용으로 6,697,8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 37호증, 을 제1, 12, 17, 20,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군재정관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스스로의 자금을 출제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① 원고의 처 G은 수사기관에서 망 E의 협조를 받아 2018. 9. 21. 망 B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망 B와 망 E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망 B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직후인 2018. 3. 20.경 망 E의 수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예금 전액인 391,486,948원이 수표형태로 인출되었고, 이 중 3억 9,000만 원이 수표로 원고의 이해관계인인 P에게 교부되었으며, 이로부터 약 1달 뒤인 2018. 4. 30.경 망 E의 수협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도 예금 전액인 14,473,415원이 수표형태로 인출되어 이 중 액면금 100만 원의 수표 10장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E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가 P에게 교부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나, P은 망 E와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고 원고와 G이 운영하는 사우나 관련 공사업자로서 망 E의 당시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 수표금의 지급에 원고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망 E가 2017. 8. 21. P에게 5,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원고와 G의 소개에

의한 것임을 원고 스스로 시인한 적이 있고(을 제20호증의 3), 망 E가 위와 같은 금전대여 이후 6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에 다시 위와 같은 거액의 수표를 P에게 교부하였고, 그에 즈음한 2018년 4월경부터 치매 등으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였으므로 위 각 돈거래는 망 E가 스스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망 E를 보살피고 있던 원고와 G이 주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교부된 수표금 1,000만 원은 망 E가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는 사실상 원고가 자신의 거래관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G이 망 E 및 망 B의 재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면서 그중 일부를 병원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원고 스스로의 자금을 출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자신의 자금을 출제한 것임을 전제로 비용상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5. 피고의 단순승인 간주 여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한정승인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동현

판사이상아

판사송영환

별지